

고성군 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963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3. 20. 고 성 군 수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3. 20.
다. 상 정 의 결 일 자 : 2006. 3. 29. 총무위원회 상정·원안가결

2. 개정사유

- 가.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경상남도로부터 개선, 지도 받은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.
나. 기초생활보장사업의 자활사업 및 자활공동체 사업자금계정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용자계정을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통합하여 기금사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여성·아동복지사업을 여성복지사업으로 개정(안 제2조제5호, 제4조제3호)
나. 기금의 용도를 각 계정별로 지정하여 세분화·전문화함 (안 제4조)
다. 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자활사업, 자활공동체용자사업과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용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으로 통합(안 제5조제1항)
라. 기존 조문을 관련사업과 연계하여 수정하여 배열함.

4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고성군 공고 제2006-71호(2006. 01. 27. ~ 2006. 02. 16.)
- 의견 및 제출사항 없음.

나. 관계법령 및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33조, 지방재정법 제110조,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, 의료급여법 제25조
-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개선, 지도(안)

5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저소득주민자녀장학사업 등 6종의 사회복지관련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 통합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경상남도로부터 동 조례에 대한 개선 권고를 받았음.
- 개선 권고 내용은
 - 현행 조례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조례의 설치근거 법령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, 의료급여법 제25조를 통합기금의 설치근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기금의 설치근거이므로 개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사회복지통합기금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함이 타당하며
-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통합기금의 정의는 “제4조 각호의 사업별 계정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” 로 정의함이 타당하며
- 제10조를 제외한 제2장(기금의 지원 및 용자) 및 제3장(기금의 반환 및 상환)은 제8장 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련된 것이므로 제8장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등의 내용이었습니다.
- 동 개정조례안은 형식적으로는 전면 개정이라는 하나 조문 정리를 위해서이며, 내용에서는 경상남도의 개선 권고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인 것으로 보여집니다.
- 따라서 현행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하기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제안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6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7. 토 론 : 없음

8. 심사결과

- 2006. 3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